##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39 발의연월일: 2021. 4. 21.

발 의 자: 문정복·강선우·기동민

민병덕 • 박성민 • 양경숙

양정숙 · 오영환 · 우원식

유정주 • 이수진 • 이용빈

장경태 · 장철민 · 최혜영

홍성국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노레일 및 케이블카(이하 궤도 및 삭도)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전국 97개 업체, 201개 기수 중 2개를 제외한 궤도 및 삭도의 주요 목적은 사람의 운송임.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에 관한 현행 법에 궤도가 포함되지 않아 불편함을 초래.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의 "교통수단"에 제도와 삭도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함(안 제2조제2호).

#### 법률 제 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항공사업법」"을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 라. 「궤도운송법」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차량
-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	2
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라. 「궤도운송법」제2조제3
	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
	람을 운송하는 차량
<u>라.</u> ~ <u>바.</u> (생 략)	<u>마.</u> ~ <u>사.</u> (현행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	3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	
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	
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
	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u>라.</u> ~ <u>사.</u> (생 략)	<u>마.</u> ~ <u>아.</u> (현행 라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

4.	(생	략)
4.	( ^ 次'	4)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
법」, 「철도사업법」, 「항공
사업법」, 「장하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
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
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
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
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 8. (생략)

4. (현행과 같음)		
5		
도운송법」, 「항공사업법」		
6. ~ 8. (현행과 같음)		